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50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4.

발 의 자 : 이학영·조계원·박선원
안호영·김기표·박희승
박민규·박 정·위성곤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현재 재학 중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이 기후에
너지환경부로부터 발급받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증명서, 의사진
단서 등을 학교에 제출하면 질병결석을 인정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경우 장기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질
병결석을 인정하더라도 수업일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
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은 그 밖의 참사 피해자인 학생이 불가피하게
질병결석하는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과 참사 피해
학생의 원활한 학업이수를 위해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법률 제 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 피해자인 학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학생
<u><신 설></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참사 피해자인 학생
② ~ ⑩ (생략)	② ~ ⑩ (현행과 같음)